

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

■ 오퍼(두기) 보내실 구·(오)33156 서울트병시 종리구 산보리 //8 라이나타의 18층 라이나생명(의 비허근신사단단자 안(고객세터 🌧 1598,0059)

78		*L¬	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8층 라이나생명㈜ 보험금심사담당자 앞(고객센터 🏗 1588-0058)			
구분		참고	구비서류			
	전체 공통 <i>(</i> 필수)		① 보험금 청구서(보험금 수령 계좌번호 기재) ②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 ③ 수익자의 신분증 사본: 주민등록증앞면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등			
공통접수 서류 재해입증 서류	자해보험금 해입증 청구시 필수		 청구서상 기재하신 계좌가 본인계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와 수익자 외 대리인, 대표 상속인 수령 사. 통장사본 제출 수익자가 아닌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수익자와 피위임자(예금주가 작성하신 「보험금수령위임장」, 「보험금 수령 위임에 대한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(당사양식), 수익자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용도・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) 제출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인 기본증명서(상세증명서)」② 미성년자가 "본인"으로 등재된 「가족관계증명서(일반증명서)」③ 친권자가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변제의 무확인서」(당사양식), 제출※ 단 보험금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작성하고 인감 날인한 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지정서(당 사양식),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. 수익자가 심신미약/심산상실인식불명, 장애 등 정신적 제약)의 경우 수익자의 「후견등기사항증명서」(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이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가능) 교통사고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·순해보험사·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사고사실 확인서 ☞ 각기관(보험회사) 산업재해사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☞ 근로복지공단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☞ 복무 군부대(치료 군병원 행정실 또는 업무과 문의) 등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법원판결문 ☞ 법원(민원실) 			
	(택1)		5 기타 재해사고·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 ☞ 각 공공기관 6.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·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·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			
	기본(선택)		・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과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 원본			
사망	유형별 추가		 수익자 미지정시(상속인)추가 요청서류 ①상속관계 확인서류(구)제적등본, 사망자(피보험자)가 "본인"으로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 및 혼인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 ②상속인이 다수인 경우(추가) 「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지정서(대표수익자지정서, 수익자 전원 인감날인 필요)」, 수익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일시금 청구 및 수령 요청서(당시양식) → 가족사랑플랜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로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			
입원	기본(필수)		· 진단명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)과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또는 소견서(선택가능)			
수술	기본(필수)		· 진단서·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			
통원	기본(필수)		· 진단명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)과 통원치료일자가 모두 기재된 통원 확인서 및 재해입증서류			
골절	기본(필수)		· 골절부위 및 재해골절 최초 진단일 기재된 서류, 재해입증 서류			
	기본(필수)		 • 후유장해진단서(일반 진단서로 대체가능한 장해인 경우에 진단서 제출 가능) ▶ 팔/다리의 관절, 척추의 운동장해는 AMA(영구적 신체 장해 평가 지침)에서 정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에 따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침고하시기 바라며,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 내용 및 가입시기에 따라 구비 서류 및 자급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문의바랍니다. 			
장해	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			사지절단:절단부위,환자상태기재,X비장,신장적출:비장,신장적출수술	,	
	기본(필수)		• 진단서(최종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 및 암 진단 확진 조직검사결과 * 단, 치매의 경우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			
진단	아 중 3	암	① 백혈병·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② 뇌/폐/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(조직검사 못할 경우) ③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(조직검사 못할 경우) 및 혈액검사 결과지			
		심근경색	·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,심전도결과지,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			
		뇌출혈	· 뇌CT,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			
	별	치매	• 인지기능검사(CDR)결과지,한국형간이인지기능 검사결과지(MMSEH) 영상검사결과지 ▶ 치매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상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,고객센터 (전화 1588 - 0058)를 통해 가입하신 보험 계약의 보장내용 및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실손	기본(필수)		·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와 진료비세부내역서(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)			
		입원	· 진단명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)과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또는 소견서(선택 가능)			
	유 형	통원	① 3만원 이하 청구의 경우. 병원진료비 영수증(질병명 기재) ② 3만원 이상 청구의 경우. 진료기간이 동일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기재된 처방전			
	병		© 300 10 01 - 01. Car 10 1 020 Car-110	1010121-22012211-	- 1112 102	
	별	처방	· 의사처방전 및 일자별 약제비계산서(영수증)→카드결제		- 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	

-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탈사이트 만원과(kww.rrinxcrgok)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(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, 가본증명서 등)
 진단서 등청구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시려는 경우, 접수전에 반드시 당사 콜센터(15580058)로 문은해주사기 바랍니다(심사 과정에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추가 제출해주셔야합니다)
- 서류별발급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ntp://www.hiacoki)홈페이지(병원약국비급여 진료비 정보)참고하여주시기 비랍니다.
- 상기안내장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기본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사고내용,특성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추가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콜센터(1888-0889) 또는 홈페이지(wwwfrecok)를 통해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